원자력품질 선임감사자과정 운영규칙

Rev. 3 (2017.02.01.)
원자력에너지학원

[원자력품질 선임감사자 Code 요건]

KEPIC QAP-1 : 요건 2 품질보증계획
< 300 자격인정 요건 >

o **선임감사자 요건 ;**

- 역할 : 감사업무 총괄 및 감독, 감사결과 보고, 시정조치 결과평가 등
- 서면 및 구두로 의사전달 능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
- 훈련요건 : a) KEPIC QAP, Code & Std, 규정 및 규제지침 이해
  b) KEPIC QAP 품질보증계획 체계(18개 기준)
  c) 감사기법, 시정조치 품목 식별/후속조치, 감사지적사항 종결 등
  d) 품질업무 감사계획 수립
  e) 감사계획의 적용 등 현장 실무훈련
- 자격요건 : a) 지난 3년동안 최소 5회이상 감사 참여경험 보유
  b) 그중 1회는 원자력 품질감사 참여경험 보유
- 시험요건 : **구두, 필기, 실기시험을 혼합한 자격평가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함**
- 자격유지 : a) 정기적 감사 참여시 가능
  b) 품질보증계획 및 감사에 관련된 검토 및 연구 참여시 가능
  c) 훈련 프로그램 참여시 가능
  d) 2년간 자격유지 못한 선임감사자는 처음부터 다시 자격인정 받아야함

[원자력품질 선임감사자과정 운영규칙]

Rev. 3 (2017.02.01.)
원자력에너지학원

1. 교육 참가 자격

선임감사자과정 교육에 참가하려면 3년 이내에 아래 2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만일 1개 교육과정만 이수하였을 경우 교육 참여가 가능하나 선임감사자과정을 수료한 이후에 나머지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합격증 발급이 보류된다(3년 이내). 단, 타 공인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것도 인정한다(수료증 확인).

- 원자력품질보증 기초과정(3일간)
- 원자력품질보증 실무과정(4일간) 또는 원자력품질검사자과정(3일간)

* 품질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일 경우 원자력품질보증 기초과정 면제
* 품질관련 경력 15년 이상(원자력품질보증분야 10년 포함)일 경우 원자력품질보증 기초 및 실무과정 면제

2. 합격기준

교육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혼합하여 자격평가시험을 치르도록 하며 실기 40점(실습 30점 + 대화기술 10점), 필기 60점으로 구성하며 합격기준은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합격한 교육생에게는 수료증외에 선임감사자 자격시험 합격증을 별도 발급한다.

- 합격점수 : 평균 70점 이상

* 불합격자는 1년 이내에 횟수와 관계없이 자격시험 재응시가 가능하며 1년이 초과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함.
* 선임감사자 자격인정은 상기 자격시험 합격증과 KEPIC QAP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소속된 회사에서 발급함.

3. 기타 운영규칙

o 교육을 이수하면 모든 교육생들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되 합격증은 자격시험을 통과한 교육생에 한하여 교육 후 별도 우편으로 발급한다.

o 선임감사자과정 교수는 선임감사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원자력품질보증 분야에 15년 이상 경력과 경험을 갖춘자로 한다.

o 필기시험은 다양한 문제로 운영하며 선다형과 서술형 평가로 이루어진다.